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 인터넷 인구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많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화의 물결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복지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혜택과 학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1] Marc Lacey, Clinton Enlists Help for Plan to Increase Computer Us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2/biztech/articles/03digital.html>
- [2] CLINTON TO PROPOSE \$2 BILLION IN INCENTIVES FOR COMPUTERS, Wall Street Journal, <http://interactive.wsj.com/articles/SB949499003542780466.htm>
- [3]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http://www.whitehouse.gov/WH/News/digitaldivide/>

영국 Oftel의 유선전화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화

공정경쟁연구실 연구원 김원중
(T. 570-4068, wjkim@sunnet.kisdi.re.kr)

1. 개 요

영국의 유선전화가입자들은 유선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월 19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영국의 통신법 시행령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이용자가 전화사업자를 변경하였더라도 기존의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번의 번호이동성 제공의무화는 이용자에게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유리

하다. 첫째,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기존의 전화번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둘째, 주거지를 변경하더라도 지역번호는 제외하고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동전화번호와 무선호출번호에 대한 번호이동성은 금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번호이동성은 영국 이동전화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진행과정

영국은 5년간의 협상 끝에 1996년부터 이용자들에게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한 지역내 번호이동성(geographic number portability¹⁾)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7월에는 BT의 면허조건을 변경하여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한 번호이동성 제공을 의무화 하였다. 1997년부터는 BT이외에 다른 유선전화사업자도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은 1999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선 /이동전화에 있어서 번호이동성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으며, 강제 적용사항은 아니었다.

1998년초 Oftel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6년 6월부터 시행된 유선전화 지역내 번호이동성(geographic number portability)으로 인하여 15만이 넘는 번호가 이동하고 매주 5,000개 번호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영국의 번호이동성 도입 경위

| 구 분 | 내 용 |
|-----------|--|
| 1991년 3월 | ◦ DTI의 백서 “경쟁과 선택: 1990년대의 전기통신정책”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번호이동성 도입 천명 |
| 1991년 7월 | ◦ Oftel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BT의 면허조건을 개정 |
| 1994년 1월 | ◦ Oftel, 번호이동성 구현방안 제시 |
| 1996년 7월 | ◦ BT의 면허조건을 변경하여 유선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 제공을 의무화 |
| 1997년 12월 | ◦ 모든 유선전화사업자들에 대해 유선전화와 무료전화 등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공을 의무화하는 면허조건 변경을 결정 |
| 1999년 1월 | ◦ 이동전화사업자 번호이동성 제공 개시 |
| 2000년 1월 | ◦ 모든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화관련 시행령 발효 |

1) 지역내 번호이동성(geographic number portability)이란 특정 시내 통화구역 내에서의 번호이동성을 의미한다.

유선전화사업자들은 번호이동성을 제공대가로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기 위한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경쟁활성화라는 취지에서의 번호이동성의 본래의 목적이 퇴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Oftel은 번호이동성 이용에 대한 적정요금을 산출하여 발표한 바 있다.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번호이동성은 네트워크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편으로 인하여 보다 저렴하거나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금번 2000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유선전화사업자들에 대한 번호이동성 제공의무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내 유선전화사업자간의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자료:

- [1] 구자춘, 「영국 번호이동성 지침발표」,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1권20호 통권243호, 1999. 11. 1, pp.45~46.
- [2] “change your company, but keep your phone number”, Oftel, 1. 21., 2000
(http://www.oftel.gov.uk/releases/2000/pr03_00.htm)
- [3] “Numbering Directive: Number Portability requirements-Statement”, Oftel, 1., 2000 (<http://www.oftel.gov.uk/numbers/port0100.htm>)